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의 전망과 대책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the Four Public Pension Schemes: Prospect and Policy Options

김춘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내는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이면서도, 정작 기금 증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연금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연금수지균형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잠재적 국가채무로서의 연금수지 적자문제는 향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의 개정 역시 기존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이러한 연금재정 불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4대 공적연금의 현재 재정수지 현황과 미래 연금성숙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 및 국가재정 부담 규모를 추계해본 뒤, 연금재정 건전화를 통해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연금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글을 쓰면서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연혁을 보면, 1960년 공무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무원연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며,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의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2009년을 기점으로 4대 공적연금 가입자는 2,000만명을 넘어섰으나, 연금수급자 역시 300만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연금제도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 비중도 매년 증가하여 2010년 15%를 돌파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

오르고 있다.

즉, “내는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로 연금제도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기금 증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연금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연금수지균형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잠재적 국가채무로서의 연금수지 적자문제는 향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의 개정 역시 기존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이러한 연금재정 불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4대 공적연금의 현재 재정수지 현황과 미래 연금성숙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 및 국가재정 부담 규모를 추계해본 뒤, 연금재

정 건전화를 통해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연금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 현황 및 전망

1)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민연금·사학연금보다 일찍 도입되어 상대적으로 연금 성숙도가 높으며, 이미 연금지출이 연금수입을 초과하여 매년 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이러한 수지적자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9년까지 약 5조 8,600억원, 군인연금의 경우 12조 8,453억원의 정부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도별 정부보전금 투입 규모

(단위: 억원)

연도	1973~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누계
공무원	-	599	-	548	1,742	6,096	6,477	9,892	14,294	19,028	58,676
군인	59,033	5,514	5,690	6,313	6,147	8,564	8,755	9,536	9,492	9,409	128,453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표 2.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향후 재정수지 전망

(단위: 억원)

연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연금수입(A)	연금지출(B)	정부보전금(B-A)	연금수입(A)	연금지출(B)	정부보전금(B-A)
2010년	56,033	72,905	16,872	9,450	21,950	12,500
2015년	70,444	107,972	37,528	11,320	28,110	16,790
2020년	84,873	155,848	70,975	13,510	35,000	21,490
2025년	97,109	211,658	114,549	15,990	42,420	26,430
2030년	116,668	278,838	162,170	19,040	50,870	31,830

※ 물가상승률(3%) 및 보수상승률(공무원 6.3%, 군인 3.6%)을 모두 감안한 추계치임.

※ 2010년 공무원연금의 정부보전금이 2009년(19,028억원) 대비 감소한 것은 2009년 연금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 시행된 효과가 반영된 것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보건복지관실¹⁾

1) 군인연금의 자료는 한국국방연구원의 「군인연금 장기 재정추계 산출연구」(2007. 12)에 따른 것으로, 이와는 달리 사회보험연구소가 2009년 2월 발표한 「미래지향적 군인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군인연금의 정부보전금 규모가 2020년에는 1조 6,940억원, 2050년에는 12조 2,680억원까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향후 연금성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정부보전금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표 2>에서 제시하는 각 연금의 향후 재정수지 전망을 보면, 2030년에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약 16조 2,000억원, 군인연금의 경우 약 3조 2,000억원의 정부보전금이 매년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 기금의 연금수지 적자분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의 취지는, 연금수지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는 동안 각 기금은 적극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기금규모를 충분히 키움으로써 장기적으로 기금이 독립적으로 연금수지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데에 있다.

그러나 2009년 두 기금의 기금운용수의 규모를 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5,012억원, 군인연금의 경우 272억원에 불과하여 <표 1>에 나타난 정부보전금 규모(연금수지 적자규모)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의 기금운용수의 규모로는 매년 발생하는 연금수지적자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연금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재정 투입이 항구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우려된다.

2)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

상대적으로 도입시기가 늦은 국민연금과 사

학연금은 현재 연금수입이 연금급여 지출을 상회하고 있어, 기금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향후 연금 성속도가 증가하여 연금수급자가 늘어나게 되면, 두 기금 역시 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44년부터 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²⁾.

사학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보다 도입시기가 빠르고 연금성속도가 높아 기금소진이 더욱 빨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학연금기금은 2021년부터 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위에서 살펴본 각 기금 별 재정 전망을 토대로 향후 국가재정 부담규모를 추계해보면, 정부가 매년 각 기금의 수지차액만큼을 국가 예산으로 보전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표 5>에서 보는 바

2) 이 전망치는 향후 출산율을 반영함에 있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의 중위가정치를 사용한 것으로(합계출산율 최종값 = 1.28명,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상의 정부목표치(합계출산율 최종 목표치 = 1.6명)를 반영할 경우 적자발생시점은 2047년, 기금소진연도는 2064년으로 전망됨.

구분	합계출산율	수지적자발생	기금고갈
기본가정	1.28명	2044년	2060년
대안가정	1.6명	2047년	2064년

표 3. 국민연금 향후 재정전망

(단위: 억원)

연도	총수입(A)	총지출(B)	수지차(A-B)	기금규모
2010	508,507	103,279	405,228	3,252,937
2020	1,099,490	318,182	781,307	9,239,846
2030	1,760,635	862,868	897,767	17,389,460
2040	2,408,439	1,986,697	421,742	24,135,672
2043	2,520,546	2,448,609	71,936	24,645,074
2044(적자전환)	2,571,726	2,625,288	-53,562	24,591,512
2045	2,621,004	2,807,695	-186,691	24,404,821
2050	2,789,882	3,778,792	-988,910	21,101,539
2055	2,650,339	4,759,690	-2,109,351	12,863,779
2060(기금고갈)	2,316,843	5,967,925	-3,651,083	-2,142,246

자료: 국민연금공단

표 4. 사학연금 향후 재정전망

(단위: 억원)

연도	총수입(A)	총지출(B)	수지차(A-B)	기금규모
2010	23,530	13,676	9,854	112,238
2015	35,920	24,337	11,583	168,625
2020	46,735	44,890	1,845	202,700
2021(적자전환)	46,155	50,054	-3,899	198,801
2025	51,690	75,773	-24,083	135,183
2029(기금고갈)	56,271	103,126	-46,855	-
2030	59,513	110,120	-50,607	-
2040	100,041	185,606	-85,564	-
2050	154,115	268,927	-114,812	-
2060	225,180	417,421	-192,241	-

자료: 사학연금공단

와 같이 2030년에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에 대한 정부보전금으로 약 25조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2050년에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한 보전금만으로 약 110조원, 2060년에는 약 384조원이 투입되는 등 향후 국가재정

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공적연금의 적자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연금가입자로부터 연금제도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게 되므로, 현재의 연금수지 전망치가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막고 지속적인 기

표 5. 연금제도 유지를 위한 정부보전금 규모 추산액(2060년까지)

(단위: 억원)

연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합계
2010	-	16,872	12,500	-	29,372
2030	-	162,170	31,830	50,607	244,607
2050	988,910	N/A	N/A	114,812	1,166,732
2060	3,651,083	N/A	N/A	192,241	3,843,324

※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추정치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사학연금공단

금수지 균형 및 기금 증식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공적연금 재정계산제도의 활성화

4대 공적연금의 근거법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에는 각각 각 연금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5년마다 재정수지를 재계산하는 ‘공적연금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적연금 재정계산제도는 각 연금기금의 향후 수입·지출에 대해 계산하고, 연금 재정 전망 및 보험료 조정 등 재정안정화 방안을 수립하여 연금제도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실제 2007년 국민연금법과 2009년 공무원연금법·사학연금법 개정 시 각 기금의 재정계산결과가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이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연금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민에 공시하도록 규정³⁾하고 있는 반면,

표 6. 각 공적연금 별 최근 실시한 재정계산

구분	실시연도	수행방법	결과 활용
국민연금	2008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재정추계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제도개선 및 계획 수립	국민연금 운영개선(안) 수립
공무원연금	2009	공무원연금공단 GEPS연구소 자체수행	2009. 12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영
군인연금	2007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 산출연구” 연구용역	장기 재정추계 내부자료로 활용
사학연금	2008	연구용역(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9. 12 사학연금법 개정안 기초자료로 활용

자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사학연금공단

3) 「국민연금법」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급여액 조정)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나머지 3개 특수지역연금의 경우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여야 함을 원칙적·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연금운영 개선계획의 수립 및 국회 제출, 공시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재정계산 결과의 공개 및 외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재정계산의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계산 방법 및 평가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정계산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⁴⁾.

따라서 향후 각 연금의 근거법 개정을 통해 3개 특수지역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한 운영개선안을 수립한 후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재정계산 방법 및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각 근거법 시행령에 규정⁵⁾하여 재정계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계산에 따른 연금 수지전망과 국가재정계획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4개 연금의 재정계산주기를 일치시키고, 재정계산이 행해진 다음연도의 각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연금운영 개선안을 일괄 제출함으로써, 국회에서 이를 함께 심사하고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특수지역연금의 퇴직연금일시금제도 개선

특수지역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은 사망 시 까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 과 퇴직과 동시에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각 특수지역 연금의 일시금 선택률은 10%에도 못미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들의 이해와 선호도가 상승한 원인도 있으나, 퇴직연금일시금의 급여액이 퇴직연금 급여 총액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적은 것에도 기인하고 있다. <표 8>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사례를 통해 일시금과 연금급여 수준을 비교한 것인데, 퇴직연금일시금이 퇴직연금 급여 총액의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퇴직자의 노후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사회보험적 성격에는 일시금보다 퇴직연금이 더 적합한 측면이 있으나, 퇴직자의 경제여건 상 일시금을 선택할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의 급여액 격차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으며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액 규모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시금을 선택하는 퇴직자가 증가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일시금 지급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의 차액만큼 기금 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4) 국회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 2007. 4

5)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계산과 관련된 거시변수 등은 4대 연금이 공유하도록 하고, 제도별 특수성을 인정해야 할 사항은 개별 근거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제안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 2007. 4)

표 7. 특수직역연금의 연금-일시금 선택비율

(단위: %)

연 도		1990	1995	2000	2005	2008	2009
공무원 연금	연금선택비율	49.9	48.4	78.2	94.6	93.9	91.5
	일시금선택비율	50.1	51.6	21.8	5.4	6.1	8.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군인연금	연금선택비율	83.3	78.8	87.2	94.3	95.7	96.3
	일시금선택비율	16.7	21.2	12.8	5.7	4.3	3.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학연금	연금선택비율	33.5	37.4	74.2	86.5	91.3	91.1
	일시금선택비율	66.5	62.6	25.8	13.5	8.7	8.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90년대 초반 일시금선택비율이 높았던 것은 장기 노후설계에 대한 인식부족과 더불어 높은 예금금리에도 기인하였음.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사학연금공단

표 8.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 급여액 비교(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사례)

비 교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선택시 급여액(A)	3억 3,763만원	4억 4,348만원
퇴직연금 일시금 선택시 급여액(B)	9,590만원	1억 4,235만원
A - B (격차)	2억 4,173만원	3억 113만원
B / A (배율)	28.4%	32.1%

※ 사학연금의 경우 1990년 임용된 교직원(26세)이 20년 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를 가정(1990년 보수월액 40만원 적용)하였고, 군인 연금의 경우 1990년 임관한 군인이 20년 간 근무하고 소령 전역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음. 연금 지급기간은 25년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사학연금공단,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3) 고액연금수급자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표 9〉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특수직역연금의 월별 연금급여 수준 분포를 보면, 고위직에 장기간 복무한 일부 공무원·군인·교직원의 경우 매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연금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연금제도가 추구하는 노후보장 및 사회보험의 수준을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공무원연금법」과 「사학

연금법」을 개정하여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교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노후보장 수준을 넘어서는 고액연금수급자의 존재는 연금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바, 법개정으로 처음 도입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제’가 과도한 고액연금수급 예방에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한편, 연금급

표 9. 각 특수지역연금의 월별 연금급여 지급액 분포

(단위: 명, %)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350만원	350~400만원	400만원 이상	합 계
공무원 연금	지급자수	10,447	138,908	88,693	20,862	1,899	101	260,910
	비중	4.0	53.3	34.0	8.0	0.7	0.0	100.0
군인연금	지급자수	8,206	38,275	22,655	3,235	538	25	72,934
	비중	11.3	52.5	31.1	4.4	0.7	0.0	100.0
사학연금	지급자수	472	13,315	13,642	7,039	1,925	109	36,502
	비중	1.3	36.5	37.4	19.3	5.3	0.3	100.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사학연금공단 제출자료를 재구성

여액에 대한 직접적 상한제⁶⁾ 등 추가적인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현재 연금 수급자의 연금 가입기간이 길지 않아 대부분이 월 100만원 미만을 지급받고 있으나, 향후 연금성숙도가 높아지면 국민연금에서도 고액연금수급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특수지역연금과 같은 방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4) 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요망

연금법 개정이나 재정계산 제도 등 제도적 개선방안은 연금 재정 건전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개인의 기여금 부담은 늘리고, 연금혜택은 줄이는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제도개선이 계속 될수록 '안정적 노후보장'이라는 연금제도 자체의 근본적 취지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내는 것보

다 많이 받는' 연금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표 10>에 나타난 공적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현황을 보면, 주택사업을 운용하는 공무원 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70% 이상을 금융자산 운용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사실상 거의 모든 여유자금을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금융자산투자는 크게 채권,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연금기금에서 채권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채권은 타 금융자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risk)이 적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주어 연금의 안정성을 추구하기에 적합한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 공적연금기금도 적극적인 수익창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6) 연금급여 지급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인 퇴직자의 경우 기준 초과분(급여 초과분 또는 재직기간 초과분)에 대해 연금대신 일시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방법

표 10. 2009년 공적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잔액	비중
금융자산	2,772,519	99.86	40,023	56.3	5,885	90.7	74,773	76.8
연금대부	826	0.03	8,539	12.0	-	-	19,812	20.4
주택사업	-	-	18,119	25.5	-	-	-	-
부동산	714	0.03	3,478	4.9	607	9.3	1,296	1.3
기타	2,365	0.09	969	1.3	-	-	1,450	1.5
합계	2,776,424	100.0	71,128	100.0	6,492	100.0	97,331	100.0

자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사학연금공단

표 11. 공적연금기금 금융자산투자 현황

○ 투자비중

(단위: %)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07	'08	'09	'07	'08	'09	'07	'08	'09	'07	'08	'09
채권	79.8	81.3	77.6	55.2	64.9	64.1	41.6	28.2	35.9	63.5	61.7	66.0
주식	17.6	14.5	17.9	20.0	5.5	15.6	5.6	19.9	6.3	16.3	13.9	18.6
대체투자	2.5	3.7	4.5	20.4	25.1	17.7	24.2	31.4	28.0	11.9	17.4	12.4
기타	0.1	0.5	0.0	4.4	4.5	2.6	28.6	20.5	29.8	8.3	7.0	3.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자수익률

(단위: %)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07	'08	'09	평균	'07	'08	'09	평균	'07	'08	'09	평균	'07	'08	'09	평균
채권	2.7	10.5	4.0	4.9	5.0	3.8	7.4	5.9	5.3	7.1	9.4	6.2	4.7	4.4	6.4	5.2
주식	33.7	-42.9	45.4	11.3	34.6	-49.8	46.3	10.0	15.1	-20.1	29.6	5.5	38.2	-39.3	50.3	12.7
대체투자	6.1	2.7	-0.9	2.0	6.7	1.8	-1.4	6.3	8.0	-1.3	0.8	4.4	10.0	2.9	8.3	7.4
기타	4.8	5.9	-0.5	N/A	5.1	5.8	3.1	4.3	4.9	5.5	3.3	4.5	4.9	5.1	3.6	4.5
합계	6.8	-0.2	10.4	5.7	9.3	-4.9	8.5	6.2	6.3	-1.4	6.4	4.2	9.8	-4.1	12.4	6.3

※ '08년 주식투자 수익률이 낮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전반적 주식시장 침체에 기인함.

※ 기타: 단기자금, 지불준비금 등

※ '평균'은 최근 5년('05~'09) 간 평균수익률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사학연금공단

연금의 경우 80%, 공무원 및 사학연금의 경우 60%에 가까운 금융자산이 채권에 투자되고 있는 것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자산운용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장기 국공채 위주의 투자방식에서 탈피하여 주식 등에 대한 분산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⁷⁾. 따라서 우리의 공적연금기금도 향후 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분산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심의절차 및 위험자산 관리기능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체투자는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과 무관하게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임에도, 최근 공적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수익률을 살펴보면 채권수익률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기금에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형태가 정해진 주식, 채권과 달리 다양한 실물자산과 사모펀드, SOC 등 여러 유형의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대체투자의 성격을 감안하여 각 공적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고, 투자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부적정한 투자로 인한 기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연금수지 적자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주기적으로 재정 재계산과 연금제도 수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납부한 기여금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 연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려면 ‘더내고 덜받는’ 방향으로의 연금제도 개편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현재 적립방식⁸⁾을 택하고 있는 우리의 연금제도는 꾸준한 기금 증식 노력과 함께 점차적으로는 부과방식⁹⁾으로의 전환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¹⁰⁾.

부과방식 연금운영의 성패는 한 시대의 은퇴 인구수와 근로인구수의 비율에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갈수록 은퇴인구가 근로인구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이 경우 세대를 거듭할수록 근로인구의 세금부담이 점점 가중되어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나 기금 운영의 효율화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